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79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4. 15.

발의자 : 박정·송옥주·송갑석

신창현·설훈·고용진

김철민·어기구·유승희

정춘숙·전혜숙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「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에 따르면 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현행 법에 따른 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역시 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6항 중 “감정평가법인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)이”를 “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)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매각 등) 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<u>감정평가법인</u>(「감정평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룰」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)이 평가한 가액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10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매각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감정평가사 합동사무 소</u> 또는 <u>감정평가법인</u>(「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룰」 제21조 및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)이-----</p> <p>-----.</p>
⑦ ~ ⑪ (생 략)	⑦ ~ ⑪ (현행과 같음)